

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1993년 8월 2일

○ 회부일자 : 1993년 8월 2일

3. 제안이유

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○ 위원회의 구성 (안 제2조)

- 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 9명
- 5명의 위원은 법관, 교육자,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
- 4명의 위원은 교육위원 2명, 교육감소속 공무원 2명

○ 위원회의 기능 (안 제3조)

-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 처리 등

○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 (안 제4조)

-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 (1차 연임 가능)
- 위 2년에 불구하고 교육위원은 재임기간, 교육감소속 공무원은 재직증인 기간
- 결원의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

5. 검 토 의 견

충청북도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바,

공직자윤리법(법률 제 4566호, 1993. 6. 11)이 개정 공포되어, 지방의 경우는 93. 8. 12일부터 93. 9. 11일 까지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등록이 실시됨에 따라 대상자의 재산등록 사항 심사와 그 결과 등을 처리할 위원회를 구성하며,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동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6. 조례안 및 참고자료 별첨